

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2011.01.01.제정 2012.01.11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 2014.05.15.일부개정
 2018.07.01.일부개정 2020.07.01.일부개정 2021.06.01.일부개정

<개정혁신팀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1.11.)
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(개정 2012.1.11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)
 ③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(同門)을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 (개정 2012.1.11.)
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이하로 한다.
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 3 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2.1.11, 2014.5.15.)
 1.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 2.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 ②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2.1.11.)

제 4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③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교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(신설 2020.7.1.)

제 6 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이를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 사생활 등을 고려하여

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다. (개정 2012.1.11., 2020.7.1.)

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총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2.1.11.)

제 7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2항은 2011년 4월 18일부터, 제2조 제1항, 제3항, 제3조 제2항, 제6조 제1항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·결산 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예·결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